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3980      |
| 의 퇴 인  | 이원택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 9. 23. |
| 추 계 번호 | 24B2976      |

#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·지도, 역학조사 등 업무를 위탁하고,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37억 600만원(연평균 27억 4,1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(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),<br>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(안 제51조제2항 신설) | 546   | 966   | 979   | 992   | 1,005 | 4,488  | 898   |
| 행정적·재정적 지원<br>(안 제48조제1항제3호)<br>—수협중앙회 재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844 | 1,844 | 1,844 | 1,844 | 1,844 | 9,219  | 1,844 |
| 추가재정소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389 | 2,810 | 2,823 | 2,835 | 2,849 | 13,706 | 2,741 |

주: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건비·기관부담금·기본경비 및 조사·지도비용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에 6개월분을 반영함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개정법률<br>안 제45조제4항 신설(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) |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</u> (제4항)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  | 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(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) |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하여 어선 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,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3  | 안 제48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                 | <p>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어선소유자</li> <li>2. 공단</li> <li>3. 중앙회</li> <li>4. 그 밖에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</li> </ol> <p>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, 지원의 내용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</p> | 재량규정 |
| 4  | 안 제51조제2항 신설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         |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, 중앙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<br>안 제45조제4항 신설(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) | 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원의 안전·보건 감독을 담당하는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</li> </ul> </li> </ul>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  | 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(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) | ○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</li> <li>-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, 조사·지도비용, 교육·운영비용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51조제2항 신설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48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                 | ○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</li> <li>- 수협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수행 경비</li> <li>*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위험성 평가 등 어선현장컨설팅 지원사업('25년 예산안 편성 참고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3호</li> <li>-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어선소유자, 공단,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, 지원의 내용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</li> </ul>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소비자물가상승률,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<sup>1)</sup>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  - 단,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등 일부 재정수반요인은 2025년에 6개월분을 반영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,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,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  
(2024년 3월 기준, 단위: %)

|                       | 2024   | 2025   | 2026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              | 2.6    | 2.2    | 2.2    | 2.1    | 2.1    | 2.1    |
|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| 11.124 | 11.234 | 11.330 | 11.425 | 11.519 | 11.614 |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어선안전감독관 개요

- 국회는 제21대국회에서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을 가결함<sup>2)</sup>
  - (목적) 「선원법」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를 일원화
  - (제명 변경) 「어선안전조업법」→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 ('25.1.3. 시행)
  - 해양수산부는 법률 시행을 대비하여 노사정협의회('23.7~12월, 선원노련·수협·해양수산부)를 거쳐 하위법령 제·개정안을 마련\*하고, 입법절차에 따라 규제심사 중('24.5월~)
    - \*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(~9월) → 입법·행정 예고(9~10월) → 법제처 심사(10~11월) → 국무회의 등 상정(12월)
    - ※ [참고자료] 「어선안전조업법」 개정 후 준비상황 참고

#### 나.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(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), 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(안 제51조제2항 신설)

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에게 어선원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·지도, 역학조사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 -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 10명을 충원할 계획('24.8월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)

---

2) 의안번호 제2125851호, 「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)  
- 원안가결: 2023.12.8.(제21대국회 제410회 제14차 본회의)  
- 공포: 2024.1.2.(법률 제19908호)  
- 시행: 2025.1.3.

□ 본 추계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신규채용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 10명의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, 조사·지도 비용에 대해 추계함

- (인건비) 신규채용 직원 10명 인건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.60%를 적용하여 산출

[표 2]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 1인당 평균 보수: 2020~2024년

(단위: 천원)

|                 | 2020   | 2021   | 2022   | 2023   | 2024   | 연평균 증가율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직원 1인당<br>평균 보수 | 60,241 | 59,073 | 59,503 | 62,619 | 64,184 | 1.60%   |

주: 2020~2023년은 결산 기준, 2024년은 예산 기준

자료: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

[표 3]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 1인당 평균 보수 전망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직원 1인당 평균 보수 | 65   | 66   | 67   | 68   | 69   |

자료: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기관부담금)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한 공공기관 신규채용 기관부담금 요율 적용
  - 기관부담금: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
- (기본경비)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최근 5년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 평균 비율 3.74% 적용

[표 4]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 비율: 2020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   | 2021   | 2022   | 2023   | 2024   | 연평균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인건비(A)                    | 33,686 | 35,618 | 38,023 | 39,818 | 39,821 | 37,393 |
| 경상운영비(B)                  | 1,050  | 1,112  | 1,412  | 1,573  | 1,847  | 1,399  |
|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<br>비율(C=B/A) | 3.12%  | 3.12%  | 3.71%  | 3.95%  | 4.64%  | 3.74%  |

주: 2020~2023년은 결산 기준, 2024년은 예산 기준

자료: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

- (자산취득비) PC·사무집기 등 1인당 자산취득비는 2025년 기준 689.5만원으로 2025년에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
    -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자산취득비 589.2만원<sup>3)</sup>에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  - (조사·지도비용)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에 따라 연간 조사 건수는 68건, 1건당 조사일수는 12.9일, 조사인원은 2명, 1인당 여비는 1일에 12만원으로 가정
    - (연간 조사건수) 약 68건 (5개년 어선원 사망·실종 평균 건수)
    - (조사일수) 약 12.9일 (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평균 조사소요일수)
    - (조사인원) 2인 1조
    - (여비) 12만원(1일, 1건, 1명당) (공단내 여비 규정 적용)
- 추계결과,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원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·지도, 역학조사 등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4억 8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 | 합계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인건비     | 323  | 657  | 667  | 678  | 689   | 3,014 |
| 기관부담금   | 36   | 74   | 76   | 78   | 80    | 345   |
| 기본경비    | 12   | 25   | 25   | 25   | 26    | 113   |
| 자산취득비   | 69   | 0    | 0    | 0    | 0     | 69    |
| 조사·지도비용 | 105  | 211  | 211  | 211  | 211   | 947   |
| 합계      | 546  | 966  | 979  | 992  | 1,005 | 4,488 |

주: 1.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인건비·기관부담금·기본경비 및 조사·지도비용은 6개월분을 반영함

2.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5년에 발생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)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, 「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」, 2020. 6.

다. 행정적·재정적 지원—수협중앙회에 대한 재정지원(안 제48조제1항제3호)

□ 개정안은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해양수산부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에 수협중앙회 지원 예산으로 18억 4,400만원을 편성함

- 연근해어업 사업장 현장컨설팅 지원 1,494백만원  
(= 4,979척(5~49인 연근해어선)<sup>4)</sup> × 0.3백만원 × 1회)
-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·배포 지급 등 홍보 350백만원  
(= 2권 × 5천척 × 3.5만원)

[표 6] 중대재해 대응 지원 예산안 편성 현황: 2025년(안)

(단위: 백만원)

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(안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어선원 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 (3132-311) |            | 어선원 맞춤형 안전·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연근해어업 사업장의 어선원 사고·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어업 환경 구현                    | 2,124   | 순증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감독관 운영   | 어선원 안전·보건 관리 업무의 해수부 일원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해당 어선사업장(약 5천척) 대상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                   | 180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대재해 대응 지원 | 어선원 안전·보건 관리 업무의 해수부 일원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해당 어선사업장(약 5천척) 대상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                   | 1,844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보건 체계 마련 | 어선안전조업법 시행('25.1)에 따른 어선원 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,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·제도적 기반 마련 | 100     |    |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「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따라서 추계기간 동안 수협중앙회에 지원하는 비용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액과 동일하게 매년 18억 4,400만원으로 가정
  - 이때, 추계기간 동안 지원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4) 개정된 「어선안전조업법」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적용받는 5~49인 소규모 연근해어선 척수: '21년 기준 4,979척

- 추계결과,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92억 1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7] 어선원재해 예방사업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연근해어업 사업장 현장 컨설팅 지원   | 1,494 | 1,494 | 1,494 | 1,494 | 1,494 | 7,469 |
|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·배포지급 등 홍보 | 350   | 350   | 350   | 350   | 350   | 1,750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| 1,844 | 1,844 | 1,844 | 1,844 | 1,844 | 9,219 |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이주호 | 배아형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|
| 이주호 | 02-6788-3746 | progress@nabo.go.kr |

## [참고자료] 「어선안전조업법」 개정 후 준비상황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### □ 하위법령 마련

- 「어선안전조업법」을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'24.1.2), 어선원 안전·보건 관리를 일원화
  - 법률 시행 대비 노사정협의회('23.7~12월, 선원노련·수협·우리부)를 거쳐 하위법령 제·개정안을 마련\*하고, 입법절차에 따라 규제심사 중('24.5월~)
    - \* 국조실 사전규제심사(~9월) → 입법·행정 예고(9~10월) → 법제처 심사(10~11월) → 국무회의 등 상정(12월)

#### < 하위법령 제개정안 주요내용 >

- **(시행령·시행규칙)** 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(제4장의2)의 적용범위, 어선원안전감독관 자격·직무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
- **(어선원안전감독관 규정)**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자격·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(대통령령)
- **(어선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)**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에 대한 세부기준, 어선소유자의 안전·보건 조치를 위한 기준, 개인보호장비 및 작업장비의 관리기준 등(고시)
- **(연근해어선 위험성평가 지침)** 어선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(고시)

### □ 전담인력

- '25년 어선원 안전·보건 전담 인력 확보
  - '25년 정기직제 어선원안전감독관 9명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KOMSA) 10명 반영('24.8, 기재부 협의 완료)
    - \* 현재 「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(대통령령)」 입법 예고(~9월) 중으로, 향후 어선원안전감독관 배치 및 세부 직무규정 마련(~'24.12월)

### □ 예산안

- 안전감독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중대재해 대응 현장컨설팅 지원 등 '25년 정부안 신규 예산 21억원 반영
  - 어선원 안전·보건 관리 상시 지원체계 구축 및 개별 어선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·보건 컨설팅 지원\* 등 재해 예방사업 실시
    - \* 5인~49인 소규모 연근해어선 대상 약 5천여척 대상 컨설팅 지원 및 안전·보건 표준매뉴얼 제작·배포 등 포함

## □ 지원체계

- 기관별 직무 분석, 고용부의 안전·보건 관리체계, 어선어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지원체계를 구축
  - － 어선원 맞춤 사업 발굴 및 기관별 역할 분담\*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(∼'24.12월)
  - \* (해수부) 어선원 안전·보건 기본계획 수립, 상시 점검 및 중대재해 대응 현장 컨설팅 사업 총괄
  - (수협중앙회) 출어선 안전관리, 어선원 재해 보험, 어선원 안전교육, 현장 컨설팅 등 지원
  - (KOMSA) 안전보건 진단 및 기술 개발, 안전·보건 상시 점검 및 어선원재해 조사 등 지원

## □ 현장지원

- 수협 인프라를 활용한 업종별 교육·컨설팅을 지속 지원
  - － ('24년) 단위수협 별 수요조사(44개 조합 신청)를 통해 현장 교육 및 컨설팅 실시(8월 현재 총30회, 23개 조합)
  - － ('25년) 개별 어선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·보건 컨설팅 지원 등 재해 예방사업 실시 예정